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민간제안사업**

2006. 12



건설교통부  
(시행사·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

## 실시협약

대한민국과 한국복합물류 주식회사는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 2월 27일 다음과 같이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 ① 본 실시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2003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계약공고(이하 '제3자 계약공고'라 한다)에 따라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2004년 11월 실시협약 협상의 일단락 이후 2005년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05년 12월 29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간에 합의된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의 범위 및 규모는 2005년 12월 29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포함해 다음과 같이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른다.  
단, 부록[11]에 명시되어 있는 경부지원시설인 47번 국도-의왕시 오봉로 연결도로 및 국도 47번 광장도로의 부지면적이 포함되어 있다

부지 규모	시설 규모
346,770m <sup>2</sup> (104,898평)	연면적 : 328,496m <sup>2</sup> (99,370평) 화물취급장 2동, 배송센타 7동 복합창고 2동, 퀸의동 등 부대시설

## 제2조(정의)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문맥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용어는 단수 및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민간투자법에 정의된 용어는 민간투자법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1. 가격산출기준일 : 본 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등의 가격 산출기준을 적용한 날로서 2005년 9월 30일을 말한다.
2. 건설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문암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건설사업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용어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건설사업관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본 협약 제21조(건설사업관리)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건설이자 : 본 사업시설의 건설·제작·매입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 충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본 협약 체결 이후 본 사업 시설의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자금이자 비용을 의미한다.
6. 계열회사 :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 가운데 동원규제 및 경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사기간 : 본 협약 제24조(공사의 차수)에 의한 공사 차수일로부터 본 사업 시설 전체에 대한 최종 준공확인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으로 27개월로 한다.
8. 공사도급계약 :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를 간에 체결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계약을 말한다.

9. 공사착수일 : 사업시행자가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는 학공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10. 공식환율 : 해당일에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최종 고시하는 해당 외국통화에 대한 시장평균환율을 말한다. 만약 그러한 환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로 대체하기로 한다.
11. 관계기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기, 체세공과금의 부과 등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적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말한다.
12. 금융기관 :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을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3. 기존시설 : 본 협약 체결 이전에 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 운영 중인 시설로서 부록[12](기존시설)에 평가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14. 기타 경미한 사업 :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후 민간투자사업 이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사업으로서, 시설사용자에게 시설과 용관적인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15. 담보권 : 해당권, 유치권, 절전, 기타 담보권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 또는 협정을 말한다.
16. 문화재 : 대한민국 법률 제7849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침의되고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17. 물가변동비 : 가격산출기준일인 2005년 9월 30일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 시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한다.
18. 물가변동율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말한다.
19. 물류 : 대한민국 법률 제7678호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되

고 있는 용어로서 체화가 궁금차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  
부어지는 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 등의 경제  
활동을 말한다.

20. 물류시설 : 대한민국 법률 제7678호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5호에 정  
의되고 있는 시설로서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 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 등을 말한다.
21. 물류체계 : 대한민국 법률 제7678호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1호의 2  
에 정의되고 있는 용어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물류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22. 민원 :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 가. 사업민원 : 본 사업의 부지 및 지정을 보상, 영업손실보상 등 본사  
인의 시행으로 세3자가 기준에 누리고 있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서 발생되는 민원
  - 나. 사업증민원 : 소음, 진동, 분진 등 본 사업의 시공 또는 운영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민원
23. 반기 : 매 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4. 법령 : 그 명칭의 미학률 불문하고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협약 당사자  
를 구속하는 법규의 효력을 가지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규  
정, 조약, 협약, 고시, 결정, 조례, 명령 등을 말한다.
25. 보건 및 안전규정 :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보건, 안전  
에 관한 법률, 규칙, 기준 등을 말한다.
26. 보조금 : 민간투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하나로서 민간  
투자법령 및 본 협약에 따라 건설 및 시설소유기간 중 정부가 사업시  
행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의 교부금을 말한다.
27. 복합화물터미널 : 대한민국 법률 제7678호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7호의

일부 및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정의되고 있는 시설로서 화물의 접하·하역·부류·포장·보관 또는 등판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말한다.

28. 본 사업 : 사업계획서 및 제3자 제안공고에 의하여 특정된 군포복합항터미널 확장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확장'이라 함은 터미널시설 및 관련 운영설비의 건설 등을 말하고, '운영'이라 함은 화물유동촉진법 제2조 제8호의 2에 규정된 터미널사업과 터미널시설운영자로서 터미널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사업, 그외 부속시설사업들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9. 본 사업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시설소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시설소유기간으로 구분된다.
30. 본 사업부지 : 실시계획에서 특정된 도면상의 본 사업시설부지 등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공사에 필요한 임시시설들이 위치한 지역을 포함한다)로서 그 지표면과 지하 및 지상공간을 포함한다.
31. 본 사업 : 본 사업기간동안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부속시설 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얻는 수입을 말한다.
32. 본 사업시설 : 본 사업기간에 건설되거나 설치되는 터미널시설 및 운영설비를 말한다.
33. 본 협약 : 본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4. 부대사업 :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투자비 보전 또는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의미한다.
35. 부속시설 : 본 사업의 운영 및 그 기능발휘에 필요한 보조기능시설(예, 편의시설)을 의미한다.

36. 분기 : 해당년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7. 사업계획서 :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상의 민간제안방식으로 2005년 12월 29일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업의 제안서류를 말한다.
38. 사업수익률 : 본 협약 체결 당시 결정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서의 수익률 및 사용료 조정을 위한 합수관계서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실질수익률(IRR)을 의미한다.
39. 사업시행자 :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정부로부터 본 사업의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부여받은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를 말한다.
40. 사업년도 :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운영개시년도의 경우에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를 말하고, 운영종료년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41. 사용료 : 사업시행자가 사용자로부터 본 시설을 사용한 대가로 징수하는 민간투자법상의 사용료를 의미한다.
42. 사용료수입 : 본 사업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말한다.
43. 소비자물가지수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원보에 고시되는 지표로서 통계청이 작성하여 공표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되고,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지수가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68조(분쟁의 해결) 대지 제70조(합의관할)에 의해 결정되는 바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가 산출된 것과 가장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대체된다.
44.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 가격산출기준일인 2005년 9월 30일자 소비자

율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본 협약에 따라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될수하는 일자 또는 사용료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일자에 고시된 소  
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정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  
한다.

45.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로서 사업시  
행자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6. 시설소유기간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된 시설소유권을 보유하  
는 기간을 의미하며,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운영개시일  
로부터 본 협약 제6조(시설소유기간)의 시설소유기간 종료일까지를 말  
한다.
47. 실시계획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한 실시계획을 말한다.
48. 실시설계 :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충분한 사항들을 기재한 설계  
도면으로서 실시계획에 정부된 도서 일체를 말한다.
49. 영업일 : 대한민국  금융기관에서 영업하는 날을 말  
한다.
50. 예비비 :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51. 외화 : 해당 시점의 원화로 계약한 대한민국 법령이 인정하는 모든 적  
법한 통화를 말한다.
52. 운영개시일 :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본 사업시설에 대  
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고 시설소유권을 교부받아 실제로 본 사업  
시설 전체에 대하여 그 운영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53. 운영설비 : 터미널시설의 운영 및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영위를 위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시설 및 화물이송설비를 말한다.
54. 원화 : 해당 시점의 대한민국의 적법한 통화를 말한다.
55. 월(月) : 어느 역월의 특정일자에 시작하여 다음 역월의 그 숫자상의

상용인자에 종료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나 영업일이 아닌 날에 이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56. 위험물 : 고체, 액체 또는 기체와 같이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폭발물, 소음, 오염물질, 폐기물 기타 독성, 유해성, 가연성,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재산 또는 사람 기타 환경에 위하여 관리되는 유기체에 단독으로 또는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위해, 손해,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7. 유지관리 : 완공된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58. 인·허가 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부, 관계기관이 행하는 허가, 등록, 인가, 승인 등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59. 일(日) 또는 날 : 0시에 시작하는 24시간을 말한다.
60. 일대효수입 : 본 사업시설의 일대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획득하게 되는 수입을 말한다.
61. 자금차입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 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62. 자금차입계약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본 협약상의 총면간부자비 중 타인자본을 차입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각종 금융계약을 말한다.
63. 자기자금 : 사업시행자가 부록[4](자금투입계획)에 따라 본 사업에 투입하는 자기자본을 말하며 자기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을 포함하며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금을 말한다.
64. 계무모델 : 별첨[1](계무모델)에 제시된 컴퓨터 프로그램 모델을 말한다.
65. 계정지원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금을 말한다.

66. 제3차제안공고 : 관설교통부가 민간투자법 및 등법시행령에 의거 한국  
복합물류주식회사의 사업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2003년 5월 24일 공  
고(관설교통부공고 제2003-116호)한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민간투  
자사업 제3차제안공고를 말한다.
67. 경부 : 본 협약의 당사자중 하나인 관설교통부에 의하여 대표되는 대  
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68. 제반공급시설 : 본 사업구간에 병행하여 설치될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및 중유관 등 제반시설을 말한다.
69. 제세공과금 :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의 시해,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과  
기타 릴레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70.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무대비, 운임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  
증세금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정의된 내용을 말  
한다.
71. 주무관청 : 본 사업의 추진주체 기관인 관설교통부장을 말한다.
72. 준공일 :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제36조(준공확인 및 시설소유권의 등  
기)에 기재된 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준공하  
인필증에 기재된 준공년월일을 말한다.
73. 준공예정일 : 본 사업시설 공사의 예정 준공일로 정한 날로서 공사착  
수일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74. 준공확인필증 : 본 협약 제36조(준공확인 및 시설소유권의 등기)에 따  
라 정부가 발행하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75.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76. 지장을 : 본 사업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 등의 시행을 방해 또는 저연  
시키는 지상 또는 지하의 유형물을 말한다.
77. 총민간사업비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

로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78. 총민간무자비 : 총민간사업비에 본 시설의 준공을 위해 소요된 에비비와 건설기간 중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79. 총사업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건설기간동안에 소요되는 전술관리비용의 총액으로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0. 총투자비 :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하여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총사업비와 에비비 및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81. 퍼조사용료 : 본 협약 제38조(사용료)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 일에 적용할 사용료를 의미한다.
82. 추경운영량 :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을로서 본 협약 부록[5](수경물동량)에 명시된 운영률을 말한다.
83. 추경사용료수입 :  사용료수입은 명시되어 있는 시설소유기간 중의 매 사업년도의 본 사업시설의 추경사용료수입액을 말한다.
84. 협약당사자 :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부의 본 협약으로 특정된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85. 회사체유형수익률 : 본 협약에 따른 이자기산일 직전 1개월 동안 한국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신용등급이 AA-이고 잔존만기가 3년인 금융 무보증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한 값을 말한다. 위 잔존만기 3년인 신용등급 AA- 회사채의 기준 수익률이 공표되지 않을 경우,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되고,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지수가 없을 경우에는 본 협약 제68조(분쟁의 해결) 내지 제70조(합의관찰)에 의해 결정되는 바에 따른다.
- ②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법률 등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7171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 대한민국 법률 제6938호 건설산업기본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정거래법 : 대한민국 법률 제670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4. 국가계약법 : 대한민국 법률 제683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5.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 법률 제701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6. 민간투자법 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93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기획예산처에서 고시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8. 산업안전보건법 : 대한민국 법률 제7920호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9. 시설물안전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7923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0.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대한민국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조달청 회계예규 제2200, 04-147-19호)을 말한다.
  11. 전기통신기본법 : 대한민국 법률 제7810호 전기통신기본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2. 하도급법령 : 대한민국 법률 제7864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서 그 수정 및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을 포함한다.
  13. 화물유통촉진법 : 대한민국 법률 제7678호 화물유통촉진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또는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 ③ 본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말

하고, 본 협약 체결일 후 개정이 있는 경우 그의 개정 또는 그를 대체하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포함한다.

- ④ 건설사업관리자, 금융기관, 사업시행자, 시공자, 건설교통부장관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의 적법한 포함 또는 특정 승계인을 포함한다.
- ⑤ 본 협약에서 “등” 또는 “포함”이라는 용어는 관련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 ⑥ 본 협약에 첨부된 부록들은 본 협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 2 장 기 본 약 정

###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국회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자계약공고 및 본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시설소유권을 설정, 부여한다.

### 제4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

- ① 정부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자계약공고 및 본 협약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관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설계 및 건설할 권한
  2. 제1호의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화장 건설예정지역내의 국·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시설소유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사업시행자는 본사업과 관련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본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3. 주무관청이 제1호의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군  
포획합화물터미널 확장 건설예정지역내에서 매입하는 토지를 설치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시설소유기간이 만료한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한. 다만, 사업시행자는 본사업과 관련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본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4. 제1호에 따라 건설된 본 사업시설을 시설소유기간동안 민간투자법에  
따라 소유·운영하고, 본 사업시설 사용자로부터 합리적인 사용료를  
정수하여 수익을 영위할 수 있으며 본 사업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
5. 본 협약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및 복합화물터미널운영관련사업,  
컨설팅부업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6. 본 협약 제43조(기타 경비한 사업의 시행)에 따라 기타 경비한 사업  
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사업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규에서 규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는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서 규정한 사  
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와 철회, 취소, 박탈, 제한하거나 달리 변  
경할 수 없다.

#### 제5조(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소유기간)

- ①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시설의 시설소유기간은 운영개시일  
로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동 기간동안 제7조(시설소유권의 귀  
속)에 규정된 시설소유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본 협약 제33조(부분준공 및 준공전 사용)에 의한 본 사업시설의 부분준공 또는 준공전 사용으로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시설소유권 설정 전이라도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가능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 의 신청에 의하여 공사에 저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분준공된 부분 또는 준공 전의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을 설정, 부여하고 화물운송촉진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 운영사업권을 부여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부분준공일 또는 준공전 사용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정수할 수 있으며, 부분운영의 기간은 제1항의 시설소유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준공전 사용의 경우에도 같다. 다만, 사업시설의 부분준공 또는 준공전 사용으로 인하여 일은 수입의 자리에 반하여는 협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추후 정하기로 한다.

#### 제7조(시설소유권의 귀속)

- ① 민간투자법 제22조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본 사업시설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본 협약 제15조(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에 명시된 총민간사업비 내에서 본 시설의 준공일로부터(부분준공 및 준공전 사용, 조기준공의 경우 실시계획상의 준공예정일) 30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소유권이 부여되어, 시설소유기간의 만료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 ② 본 사업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 즉시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되, 시설소유기간이 만료되어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 ③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시설소유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의 귀속은 제66조(중도해지 또는 협약종료에 따른 일반 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사업시행자의 의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계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

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기존 시설의 운영악화 등  
의 사유 발생시 그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본 사업의 시장이 성공적으로  
주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금융계약의 체결  
을 포함한 자금조달,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 및 기타  
본 협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된 위험을 부담한다.

#### 제9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 ① 사업시행자인 한국복합문화주식회사의 주주구성 및 그 지분율은 부록[1]  
(사업시행자 출자지분)과 같다.
- ② 사업시행자는 지분율 5% 이상의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무관  
청은 사전 승인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승인이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지는 출자자 또  
는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본 조항과 관련하여 민간부자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별  
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제10조(보험가입)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 협약 및 실시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제3자에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정부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조건은 등중 보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외  
보험의 조건(부보 가능한 불가항력사유 등을 포함함)으로 하되, 그 구체  
적인 사항은 본 협약의 부록[10](보험가입)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1조(업무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민간투자법 및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업무)

- ①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본 사업시설부지내에 속하는 토지 및 지장을 보상, 기타 손실보상은 정부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토지 및 지장을 매수업무 등의 지원으로 공사기간의 연장, 사업비 증가 등이 필요한 경우 제52조(정부귀제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용, 관리와 관련하여 권리와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1. 본 협약 제23조(공사기간)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등 공사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2. 본 사업시설의 유치보수 및 관리계획의 승인
3. 시급을 요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건급유지보수
4. 기타 본 협약으로 위임이 결정되었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협약의 성설이행)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와 정부는 본 사업과 관련된 계반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시행자와 정부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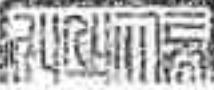
#### 제15조 (총사업비 및 충반간사업비)

- ① 본 사업시설의 총사업비는 부록[2](총사업비)와 같이 2005년 9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262,060백만원(무가가치세별도)이며, 이는 충반간사업비는 부록[3](충반간사업비)과 같이 국고보조금 금11,028백만원을 제외한 금251,032백만원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재무모델을 작성하여 부록[1](재무모델)을 전산파일로 첨부도록 한다.

#### 제16조 (총사업비의 변경)

- ①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외 이 협약상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에 의한 총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정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계획변경, 그외 정부의 요구에 의한 공법, 시설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의 증감 또는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3. 공사관련 법령(표준시방서, 정부제정 설계기준 및 지침 등을 포함한다)의 제·개정으로 인한 설계기준 및 사공기준의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본 사업시설 추진과 관련된 사업민원(시공민원은 제외), 인·허가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기관 요구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 또는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5. 법령(민간투자법, 조세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다)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6. 불가항력,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7.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위한 입찰 또는 공사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비가 증감되는 경우

- ① 제1항에 따른 충사업비의 변경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충사업비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계정용자,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해결하며, 제1항 제6호의 경우는 제53조(불가항력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에 따른다.  
다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증감으로 인한 충사업비의 변경은 제48조의 제2항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충사업비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계정지원,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해결하며, 제1항 제6호의 경우는 제53조(불가항력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에 따른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충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 신출근지를 공인회계사 등 전문기관의 확인(다만,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 서류를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중대한 설계기준 및 공법 변경은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한다. 단, 정부의 사업시행자는 위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 제17조(자기자금 투입)

-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4](자금투입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을 투입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충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 제 4 장 실시절차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 기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함)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신체 행정절차가 사업시행자의 과제이 아닌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등 지연기간은 승인신청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승인, 추가자료 제출 또는 보완요구, 또는 승인거절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실시계획승인신청시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협의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과 체결한 자금차입계약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업부지의 침유권)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기간동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부지에 대한 배타적 침유권, 사업부지 출입, 무상사용 및 기타 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사업부지와 관련된 저작물은 제27조(저작 및 저작저작물)에 따라 처리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사업 시행에 저작을 주지 않도록 하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② 실시계획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부지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전체 사업기간 동안 사업부지를 소유하며 이 협약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부지, 이의 일부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위 사업부지의 양수인으로부터 위 부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제1항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학약서 또는 합의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의 종료 또는 이 협약의 해지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 이 협약 제4조 1항 2호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사업부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환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없는 한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 (사업이행보증)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행부지에 정상적인 건설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보유증인 국공채,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이하 '보증금 등'이라 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준공일 이전에 정부가 본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사업시행자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정부가 보험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정부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준공일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보증금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준공일까지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지 아니하고 본 사업시설이 절상적으로 준공된 경우 정부는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한다.

## 제21조(건설사업 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자체 없이 위 계약의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풍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개시한 건설사업관리업무의 기간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한 실시실계 예비검토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 후 3 개월까지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신청 1개월 이전까지 실시실계의 예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공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 계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업무 현황을 협약당사자에게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협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수시로 제시하거나 협의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배만히 하는 경우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 관리자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그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공사기성을 근거로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출, 지급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책임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본 협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2조(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시공자를 정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및 일용창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자 선정 후 즉시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약방법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본 사업시설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이하 "하수급인"라 한다)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의 하도급조건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소재지의 지역업체의 우선선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의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 등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의 시공과정에서 노임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불노임 등을 적절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 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책임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 ⑦ 정부는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계약, 공사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에 계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본 협약의 해지시 정부에 의한 관련 계약 승계 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23조(공사기간)

-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27개월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공후 1년 이내에 정부가 보상하기로 한 본 사업의 부지매수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의 공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16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2조(정부 귀책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또는 제53조(분가할역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 제24조(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으로 정한 공사일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정부는 실시계획 승인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공사착수일을 지정·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의 발생, 용지보상의 지연, 공사착수에 필요한 토작질자가 완료~~되~~거나 본 협약의 제16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착수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착수일을 조정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일 7일 이전에 착공계를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관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공정보고)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제시된 바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실하게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해 분기별로 건설사업관리자의 결트의견을 첨부하여 관설교통부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추진현황을 보고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매년 1월말까지 본 사업시설의 전체 공정 및 전년도 사용 분이 표시된 설계도서, 당해 사업년도의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

관리자의 겸토의견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위험물의 발견)

- ① 공사기간 중 본 협약체결 당시 협의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정부에 통지하고 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중화 등과 관련된 인·허가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나 관계기관이 행하는 본 사업부지에 대한 출입, 시설의 이용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관계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등으로 인한 관련 사항 및 관계법령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위험물의 발견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합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설의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위험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공사기간 지연 등의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하며, 제53조(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27조(지상 및 지하저장물)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적절적인 영향을 주거나 해당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및 지하 시설물을 가능한 한 모두 조사 확인하고 이의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 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조사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저장물이 실시계획 승인 후 발견된 경우 이의 이설 내지 추가공

사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비용이나 공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53조(불가항력 사용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28조(문화재의 발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문화재를 파손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에 문화재 발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문화재가 발견된 위치와 상태대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문화재발견 사실 통지 이후 20일 이내에 동 문화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하여야 할 추가조치를 시민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 발굴은 경무 및 관계기관의 감독 및 참여 하에 수행되며, 이와 관련된 계반사항 및 처리비용은 문화재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④ 협약당사자는 문화재의 보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공사기록부인 등의 ~~기록부~~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53조(불가항력 사용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29조(환경 및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사업개안 및 실시계획에서 계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계반책임은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심검(정밀 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포함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적발 시령하고 그 소요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30주(인천시립)

- ①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민원(본 사업부지 및 저장물의 보살, 영업 존설보상과 관련된 민원)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정부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추진에 저장이 없도록 한다. 다만, 설사계획 승인 후부터는 전선교동부착 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협동으로 사업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원을 제외한 본 사업과 시공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 민원의 발생하는 경우 민원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위 각 항에서 규정한 민원의 해결이 지연되거나 위의 각 항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저장을 초래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등 민원의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등 민원 해소에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사용료 및 총사업 비와 변경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적 민원은 제외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주장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민원 또는 청구를 수령한 경우, 성실한 자세로 이 청구 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하며,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민원해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 제31조(사업이행지체)

- ① 사업시행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기간 포함)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계획으로 정한 공사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확인을 신청한 날까지 1일당 지체상금으로 총사업비에서 항목별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으로 정한 공사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누적액은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지체상금 누적액이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하고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민간투자법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본 협약 제23조(공사기한 위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 사업의 이행지체로 보지 아니한다.

### 제32조(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실적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3조(부분준공 및 준공전 사용)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사업시설 전체의 준공전이라도 일부시설에 대한 준공이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

시설의 일부에 대한 준공 확인 및 소유권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는 부분 준공된 사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협약당사자는 일부시설의 부분준공으로 인하여 나머지 시설의 준공이 예정일보다 지연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 준공예정일을 편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부분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36조(준공확인 및 시설소유권의 등기)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분준공에 대한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분준공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부분 준공된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시설 운영을 허용한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준공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준공 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34조(시설투자의 완료)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부분준공 및 조기준공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관리사무소, 출입시설, 운행설비 및 운영시스템 등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35조(정부지원시설의 적기 준공)

- ①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의 책임 및 비용 부담으로 부록[11](정부지원사항 및 시설공사)에 명시된 일정고속도로 안산 방면 진출입램프 등 정부지원시설을 적기에 착공하여 공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지원시설을 준공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부분 준공하거나 조기 준공하여 본 사업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실시계획에 따른 준공예정일 이전에 운영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정상적으로 유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기간시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제36조(준공파일 및 시설소유권의 등기)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준공예정일 3개월 전까지 건설사업관리자가 작성한 예비준공검사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 기간 중에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비준공검사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시면으로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미비사항을 완결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체 없이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가 하인한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준공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장 신고부상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준공검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확인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등 기간 내에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지 못하거나 준공확인필증 교부 전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3조(부분준공 및 준공전 사용)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23조(공사기간) 제1항에 규정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기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 기간 내에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지 못하거나 준공확인필증 교부 이전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3조(부분준공 및 준공전 사용)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필증(초기준공을 포함한다)을 교부받은 후 즉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운영개시일 이전에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설소유권의 등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제4항 규정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건설지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 5 장 수익률 및 사용료

### 제37조(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2005년 9월 30일 기준 세전 실질사업수익률 6.99% (세후 실질사업수익률 5.64%)로 협약 종료 시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 제38조(사용료)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 사업년도에 적용할 연도별 기준사용료는 2005년 9월 30일 불변가격기준으로, 부록[6](사용료)과 같다.
- ② 운영개시년도에 적용할 최초 사용료는 제1항에 의한 기준사용료에 사업 계획서에 반영된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연립지 기준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시설별 사용료를 반영하고 그의 불가항력 사유, 정부위체 사유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제33조의 부분준공으로 인한 추가수입 등을 정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산정한다.
- ③ 운영개시년도 이후의 각 사업년도에 적용할 사용료는 전년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에서 매년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료 적용기준일 1개월 이전까지 사용료의 종류, 요율 및 징수기준 등을 그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은 매 사업년도 단위로 산정하여 반영하되 1년 미만인 기간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사용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제39조(사용료의 정수)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 제40조(사용료의 조정)

- ①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매 사업년도의 정기적인 사용료 조정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료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사유. ~~본부규제~~ ~~수수료~~ 기타 청부가 약정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협약당사자가 사용료의 조정방법으로 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경우
  2.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와 합의한 경우
-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의해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 그 입증자료 및 본 협약 제38조(사용료) 제3항의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협약당사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사용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 협의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의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전문기관에 사용료 산정을 의뢰하고, 협약당사자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료 산정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협약당사자는 전문기관이 산정한 결과를 인정하기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용료 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영업전략 등의 목적으로 제3항 내지 본 협약 제38조(사용료) 제3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용료를 인하하여 경수할 수 있다.

#### 제41조(추정물동량 및 추정사용료수입)

본 협약에서 사용되는 본 사업시설의 추정물동량 및 추정사용료 수입은 부록[5](추정물동량)에 제시된 연도별 운영비 및 부록[7](추정사용료수입)에 제시된 2005년 9월 30일 불변가격기준의 추정사용료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 제 6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42조(운영비용)

-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용은 2005년 9월 30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금 206,456백만원으로서民間두자벌에 및 본 협약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되,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부록[8](운영비용)과 같다.
- ② 시설소유기간 중 각 사업년도의 경상가격기준 운영비용은 제1항의 운영비용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시설의 유자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경영독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문별 운영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시설소유기간 중 법인세를 등 기타 세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감하는 경우 운영비용의 증감을 이유로 사용료의 조정, 시설소유기간의 조정 등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사유의 발생을 근거로 부록[8](운영비용)에 규정된 운영비용을 변경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전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사용료의 인하, 시설소유기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없다.

#### 제43조(기타 경미한 사업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는 화물의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여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타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단지 대에 설치한다. 사업시행자는 이가사업 기간동안 편의시설을 임차인에게 임대 또는 렌트 한다. 부대사업은 요식업, 소매점, 풍선(예, 전화와 컴퓨터), 자판기, 휴식시설을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2. 임차인 선정과 임대 및 렌트 결정권, 부대사업 관리권리는 사업시행자에 관해 귀속한다.
  3. 사업시행자는 상업적 쟁고 목적으로 위하 단지내 공간의 임대, 렌트 등점권을 보유한다. 임차인 선정, 임대 및 렌트 결정, 광고의 승인 및 관리권리는 사업시행자에 한해 귀속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기타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배 사업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상에 당해 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 수입내역 등을 표시하고 그 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4조(유지관리 및 품질확보)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및 부속시설이 시설소유기간의 종료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정부에 귀속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본 사업시설 및 부속시설로 인하여 시설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최대한 도모될 수 있도록 신중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운영개시일의 3개월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5년 만 1개월 전까지 다음 5개년도의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계획이 현저히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당해연도에 양주 5개년도의 관리·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3자와의 협약을 통해 등 유지·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고, 제3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될 때에는 계약의 주요 조건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등 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설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긴급유지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가능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수, 개량, 개축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⑥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소유기간 중 위험을 발생시킬 하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험요인을

처음 할 수 있는 보수 또는 개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풍보하고, 하자의 보수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이행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45조(관리 및 운영 등의 관련계약)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 관리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 대행하게 하는 등 운영, 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운영, 관리업무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 선정 후 즉시 이를 전설교통부장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 관리업무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와 운영, 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약조건에 대하여 전설교통부장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가보수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탁자 또는 계약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 상 부과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 제46조(운영실적보고)

-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4월 말까지 직전 사업년도의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부대사업, 기타 경미한 사업,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설비 등을 전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규정, 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 물동량은 3년 단위로 조사하여 보고하되,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를 수행하여 보고할 수 있다.
- ② 전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의 경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열람 복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7조(임주자 신경)

- ① 사업사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임차인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협약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임차인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2. 임차인이 시설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간(6개월)에 걸쳐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임대면적은 시설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3. 물류업체에게 물류활동을 위탁하고자 임차인인 제조업체가 전대차하는 경우
- ② 퀘의 각 호의 경우 본 사업시설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의해 납부하는 사용료를 초과하여 전차인에게 전차임을 경수할 수 없다.



#### 제48조(정부의 재정지원)

- ① 정부는 민간투자법 제53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사행자에게 필요한 경우 보조금 또는 창기대부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폐손부담금(2005년 9월 30일 불면가 기준)은 55,138백만원으로서 정부는 이중 20%(11,028백만원)를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사행자 부담분 80%(44,110백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정부의 재정용자를 통해 지원한다. 다만, 부담금 산정기준인 개발종시지가 등의 변동이나 관계법령 등의 개·개정으로 위 폐손부담금이 증감하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개발제한구역 폐손부담금이 44,110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는 초과분에 대하여 전액 부담한다.

2. 개별제한구이 해손부담금이 44,110백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등 금액을 전액 부담하되,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부담분 감액을 이유로 부담분 차액의 반환, 사용료 또는 시설소유기간 등의 조정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③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위 제2항의 해손부담금 관련 계정지원을 제외한 충민간사업비의 40%를 정부의 재정에서 융자하며, 이 경우 충민간사업비에 대한 둘가상충분도 정부의 재정을 차대상(건설이자 불포함)에 포함된다.
- ④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계정지원금을 관계기관의 정책에 의하여 예산이 학감 또는 조정되어 그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손해가 없도록, 시설소유기간, 사용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9조(비 재정적 정부지원)

- ① 관계법률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 기타 사업시행자 귀책이 아닌 사업자연 사용자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 제23조(공사기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본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계관청에 대한 제반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필요한 경우 본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통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의기자재 및 장비의 수입 등과 관련한 현금차관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도입조건(원금,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의미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당시설 및 현금차관의 도입에 필요한 수입허가절차, 인·허가절차 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⑥ 정부는 사업시행자와 금융기관간의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차입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 ⑦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라 부여받은 시설소유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근거당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 사업시행자는 금융기관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 계약상의 채무불 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금융기관이 근거당권을 실행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한다.
- ⑧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타인자본 이외에 추가로 타인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본 사업시설에 대한 근거당권을 설정할 경우 시전에 전 설교통부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다.
- ⑨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 제 8 장 위험분담



### 제50조(위험 배분 원칙)

- ①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험은 사업시행자 귀책에 의한 위험, 정부귀책 사유에 의한 위험,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위험으로 구분한다. 사업시행자 귀책에 의한 위험은 사업시행자가, 정부귀책 사유에 의한 위험은 정부가 각각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 ②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위험은 1차적으로 관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협약 제53조(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에 의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약당사자간 해당 위험의 유형과 성격규명 및 위험분담비율을 정할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발생사유가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관한, 치매범위에 근접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 제51조(사업시행자 귀책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보되, 이를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위반한 경우
  2. 민간투자법 제45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서 규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제18조(설시계획의 승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하지 않거나 공사 완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준공예정일까지 본 사업시설의 준공에 이르지 못한 경우
  6.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안전관리, 시설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과산선고가 있는 경우
  8. 사업시행자가 해산 및 청산한 경우, 다만, 합병으로 인한 해산 및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정부에 해지 통보를 한 이후의 해산경정은 제외한다.
- ②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또는 중단, 총사업비 및 운영비 증가, 사용료 수입 등 운영수입의 감소, 기타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52조(정부 귀책 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정부 귀책사유로 보되, 이를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의 요구(본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본 협약 제3조(민원처리) 제1항의 정부가 처리해야 하는 민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요구 등 포함)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 지연 등 사업추진이 중단 또는 지연되거나, 공사물량의 증가 또는 신규비목의 발생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2.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본 사업시설 또는 본 사업시행권에 대한 징벌, 물수 또는 국유화 조치가 있는 경우
  3. 정부 보상업무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4. 정부의 요구나 방침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조정, 결정된 사용료보다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
  5.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적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된 실시계획의 승인, 인·허가 처리절차의 지연 등 본 협약에 정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과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7.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하였던 금원을 그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정부규칙 사유로 충사업비 및 운영비의 증가 등 사업시행자에게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며, 정부는 이를 이유로 본 협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정부규칙 사유로 본 사업의 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사용률 치유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2. 시설소유기간 중인 경우 정부는 해당 사용로 인한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협약당사자는 사용료 또는 시설소유기간 조정으로 해당 사용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방행하여 검토하기로 하며, 협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시설소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3조(불가항력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 ①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경기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민간투자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단계 51조(사업시행자의 귀책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제1항 제6호에 의한 법령을 제외한다.
-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태풍, 대중,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천재지변
  2. 전국적 또는 산업전반의 노동쟁의
  3. 정치적, 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의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예측할 수 없는 위험물, 시장을 또는 문화재의 발견, 친인을 규명할 수 없는 폭발 또는 화재, ~~방사능 오염~~ 학물질에 의한 오염 등으로 사업 추진이 자연, 중단되거나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
  5. 제1항에 정한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
- ③ 불가항력사유로 중사업비 및 운임비용의 증가, 기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보험으로 해소하되 보험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 ④ 건설기간 중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해당 사유의 치유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2. 중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비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경우 정부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추가비용의 75%를 부담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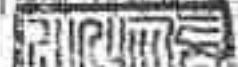
나.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경우 정부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추가비용의 90%를 부담하기로 한다.

⑤ 소유·운영기간 중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복구 등과 관련하여 추가비용 또는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비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경우 정부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추가비용 또는 운영손실의 75%를 부담하기로 한다.
2.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경우 정부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추가비용 또는 운영손실의 90%를 부담하기로 한다.

#### 제54조(불가항력의 제외)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협약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이 있거나, 불가항력사유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협약당사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제55조(불가항력의 발생통지 및 이의제기)

- ①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을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제1항에 의한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가항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예비적 평가내용, 가능한 대처방안 등을 서면통지(불가항력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하여야 한다.
- ③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협약당사자가 통지된 불가항력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불가항력사유 발생에 대한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이의제기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 2회 이상에 걸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협약당사자가 계4월의 기간 이내에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한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이 통지한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⑤ 불가항력 이의제기의 통지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회되지 않은 경우, 등 분쟁은 제68조(분쟁의 해결)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다.

#### 제56조(불가항력 발생 시의 조치)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불가항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완화 또는 치유조치를 취함에 있어 민간 부자별 등 관련법령 및 규정, 본 협약에 따라 협약당사자간 위험의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 ③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 분쟁은 제68조(분쟁의 해결)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다.

### 제 9 장 중도해지 및 시설소유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의 종료

#### 제57조(중도해지에 따른 협약의 종료)

- ① 본 협약은 제65조(시설소유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종료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의해 종료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협약해지에 앞서 위험의 치유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 사업의 계속 수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정부의 협약 해지
2. 정부귀책사유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협약 해지

### 3.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협약의 종료

### 4. 협약당사자 상호협의에 의한 협약의 종료

- ② 본 협약 제58조(정부에 의한 중도해지) 내지 제60조(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협약에 의해 설정·부여된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책임, 시설소유·운영 기간 등이 종료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실사를 시행하여 이를 정부에 양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정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본 사업의 승계인이 승계(해당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 한한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시설소유기간 중 본 협약이 해지 또는 종료 되는 경우로서 정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본 사업의 승계인이 본 사업시설의 소유  까지 기관 및 관리 하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나주한~~ 사업시설을 ~~체득~~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소유권의 인계, 인수는 자체 없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본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의 인계, 인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문항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의무는 소멸한다.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은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제58조(정부에 의한 중도해지)

- 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이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협약의 중도해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자격의 박탈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4개월 이상 부여한다. 단,

제51조(사업시행자 귀책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제1항 제7호, 제8호에 한해서는 그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59조(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 ①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귀책 또는 부당사유로 본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협약의 해지를 서면 통지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유를 이유할 수 있는 기간을 4개월 이상 부여한다. 단, 제52조(정부귀책 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의 제1항 제2호에 한해서는 그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60조(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불가항력 사유를 이유 또는 개선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적절한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해지의 통지 이전에 본 협약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의 치유방안,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본 협약의 종료여부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3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다음 각호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협약상대방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협약은 통지의 도달로써 종료된다.
  1.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본 시설의 건설공사 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단, 위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총사업비 및 운영비가 현저히 증가하여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 제61조(중도해지에 대한 이의 제기)

- ① 협약상대방으로부터 협약의 해지를 통지 받은 협약당사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답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협약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성실한 자세로 그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본 협약 제68조(분쟁의 해결)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 제62조(중도해지시 지급금 산정 및 지급의 일반원칙)

- ① 정부는 본 협약 제63조(중도해지시 지급금)에서 산정된 해지시 지급금액 또는 제67조(매수청구권)에 따라 산정된 매수가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단, 시설소유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본 협약의 해지일로부터 30일  (중도해지시 지급금)에서 산정된 해지시 지급금액 또는 제67조(매수청구권)에서 산정된 매수가액 대하에 협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협약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협약당사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해당 금액의 산정을 외뢰받은 후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이를 산정하여 협약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금액이 정하여지면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금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적정가치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일방 당사자가 전액부담하고,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공동하게 분담한다.
- ③ 협약당사자간에 전문기관 지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산정한 금액을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협약 제68 조(분쟁의 해결) 대지 제70 조(합의관할)에 따르기로 한다.

- ③ 정부는 해지시 지급금 또는 예수기에 본 협약의 중도해지일 또는 배수청 구인경률보일로부터 해지시 지급금 또는 예수기의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회사체 유통수익률로 계산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부가 본 협약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 그 지급시기 도래일 이후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의 계산에 대하여도 위와 같다.

#### 제63조(중도해지시 지급금)

본 협약 제58조(정부에 의한 중도해지) 대지 제60조(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부록[13](해지시 지급금)에 의한다.

#### 제64조(중도해지시 지급금의 조정)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제63조(중도해지시 지급금)에 의거 전설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에 상당을 공제한다.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체무를 정부가 관계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정부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체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5조(시설소유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의 종료)

- ① 본 협약은 제58조(정부에 의한 중도해지) 내지 제60조(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에 따라 중도해지 또는 제67조(매수청구권)에 따라 배수되지 않는 한, 제6조(시설소유기간)에서 정한 시설소유·운영 기간(이하, 본 협약 규정에 따라 조정된 시설소유·운영 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협약종료와 함께 제4조(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에 따라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시설소유권 등 권리와 의무도 소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소유·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3년, 1년 및 6개월 전에 각 1회씩 정부 또는 관설교동부찰관이 지정하는 자(기관)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 및 운영설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종료와 동시에 본 사업시설 및 계통보통상 전역 내용연한을 가진 운영설비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도록 하게 한다.
  -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수리 및 보수, 교체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관련 없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통상적 마모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정부에 인계되는 본 사업시설 및 설비자산과 기타 물품은 서명된 약정서에 기록하며 무상으로 이양한다.
  - 정부는 제1호에 의한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본 사업시설의 인수 확인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다만, 정부는 본 사업시설과 설비가 설계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정하는 만족요건과 다르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정부가 통지한 거부사유와 근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등지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의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이의의 등지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의의 등지가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등 이의의 합리성에 대하여 상실하게 험의하여야 하며, 협의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8조(분쟁의 해결)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 제66조(중도해지 또는 협약종료에 따른 일반 규정)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이 중도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 및 운영의 원만한 인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정부 또는 경부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실사를 시행하여 정부에 양도하여야 하며, 협약종료시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본 사업의 승계인이 해당 계약을 승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한한대~~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본 사업시설(건설기간중인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정부에 귀속되고 본 협약에 의해 설정,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의무, 책임, 시설소유·운영권 등을 즉시 이전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고 본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해지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모든 통산 및 자산,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운영, 관리 또는 해저 적전의 사용료 부과, 징수 등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또는 사용증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 인수할 수 있다. 단, 제3자의 권리에 속하여 사업시행자가 양도 불가능한 자산, 권리는 제외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의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보유장비의 가액을 시설소유·운영 기간동안 전액 상각하고, 시설소유·운영 기간 종료시 성기 장비를 무상으로 정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⑥ 시설소유기간 중 본 협약이 종료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로서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본 사업의 승계인이 본 사업시설 및 운영을 인계할 때까지 정부의 관리 하에 본 사업시설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은 협약당사자 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종료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본 사업의 유지관리, 운영과 관련한 중요 문서 및 도면 등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 등을 체온하여서는 안된다.

⑧ 본 협약의 종료해지 및 종료는   현재 본 협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⑨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종료해지에 따른 효력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안전 및 본 사업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부에 안전조치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7조(예수청구권)

-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대하여 당해 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액은 협약 발생일 당시의 영업권을 포함하여 잔여기간 중 기대수익을 협약당사의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공사기간중인 경우에는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를 상한으로 하여 매수청구권의 발생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62조(중도해지시 지급금 산정 및 지급의 일반원칙), 제64조(중도해지시 지급금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실시협약 체결시 기준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본 사업시설의 보수 또는 개시공비가 실시협약 체결시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초과한 경우
  3. 본 협약에 정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4. 기타 전설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배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2) 사업시행자는 배수청구에 앞서 위임의 치유 및 대체사업자 선정등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 제68조(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을 신의성실 원칙하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 본 협약에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당사자가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본 협약 제69조(중재)에 의한 중재에 의하거나,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한다.

#### 제69조(중재)

-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협약당사자가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한상사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한다.

- ①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대한상사중재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르며, 협약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증거나 분쟁사유를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다.
- ② 중재비용은 중재판정으로 결정한다. 중재판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 회종 중재인 선임일 이후 3개월 경과 시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단, 협약당사자가 상호 약정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 ③ 중재인의 판정은 항소, 상고, 항고 등 그에 대한 불복을 협약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협약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 제70조(합의관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을 체결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성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제 11 장 비밀 유지 등 기타사항

#### 제71조(비밀유지)

-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 그리고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3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비밀히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개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본 협약에 따른 시공자 및 하수급인에 대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정보의 공개
3.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정보로서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4. 법령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5.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상의 필요에 따른 정보의 공개
6.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기관,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 제72조(제3차 제안공고의 변경)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3차 제안공고에 따르되, 본 협약 내용 중 제3차 제안공고와 상이한 사항은 본 협약내용에 따라 제3차 제안공고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73조(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의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학생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약당사는 본 협약 체결 후 금융자금의 조달목적 기타 제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협약당사는 협약의 변경여부의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의 변경 이후에도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보장된 사업성이

확보되는지의 일부 및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 제74조(권리의무의 양도)

- ①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의 본 협약 상 권리의 양도, 이전, 담보제공 기타의 방법으로 차분하거나 그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 ②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선포장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제43조(기타 권리와 사외의 사례)의 기타 경비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있으나 이  으로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제75조(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각 협약당사자와 사업시행자의 포괄 충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와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76조(일부무효)

특정 관할 내 적용되는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 불가능은 그 법 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내 적용되는 법률에서의 또는 본 협약 상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77조(적용법규)

- ① 본 협약 및 그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 및 서류는 대한 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협약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투자법, 회풍유동촉진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이들 법률에 부속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한다)과 민간투자기본계획 및 제3차 재인공고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 제78조(대체자의 선정)

- ① 제58조(정부에 의한 중도해지)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유를 치유할 것을 통지한 경우에는 시행기간 내에 해당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이익의 성실에 관한 통지를 하거나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지급기일이전에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은 정부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대체자의 추천에 대한 동의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및 금융기관에게 대체자 지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한다. 이 경우 정부는 추천된 자가 본 협약 상 ~~제3점~~ ~~제5점~~의 설계, 공사, 운영 기타 유지보수를 지속할 수 있는 자격과 자금조달 또는 기술능력을 갖고 있음이 합리적으로 확인한 후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 ③ 본 조에 따라 정부가 금융기관의 추천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대체자를 결정하는 경우 등 대체자는 대체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인수하며, 이 경우 정부와 등 대체자는 대체일 현재 존재하는 기존 사업시행자의 재무분야에 사유를 사정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기로 한다.
- ④ 본 조에 따른 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금차입계약 상의 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의무, 사업시행자 이행보증서상의 사업시행자 권리 및 의무, 설계계약과 공사도급계약 및 기타 본 협약과 관련된 모든 계약상 사업시행자 권리, 의무와 기타 대체자가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자금조달, 유

지보수, 운영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모든 자산, 계산 및 권리의 대체자에게 귀속된다.

- ⑤ 정부는 사업시행자 대체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기로 하며,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본 조에 따른 대체의 후속조치로의 정산 및 기타 요구되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또는 작성하기로 합의한다.

#### 제79조(통지)

- ① 본 협약상의 통지 또는 최고는 다음에 게재된 연락처로 인편 또는 우편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각 협약당사자에 대한 문서의 통지나 송달은 아래의 주소로 이루어진다.

##### 1. 정부에 대한 통지 : 진실교통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판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참조 : 물류혁신본부 물류시설정보팀장



8225

504-7372



8225

#####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소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번지  
참조 : 전략경영팀장  
전화 : 02-2014-7531  
팩스 : 02-2014-7405

- ③ 협약당사자는 위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지는 통지의 접수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④ 본 협약상의 통지는 우편인 경우 적절 당해 주소에 전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발송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80조(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정무협조)

- ①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국내의 금융기관과 본 사업 시행자간에 체결된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시에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 ② 정부는 금융기관이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의 시설소유권에 대한 근거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금융기관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금차입계약 상의 재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금융기관이 근거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 전에 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그 자금차입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체결 이후 자금제조달을 추진하는 경우 자금제조달서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 제81조(정부의 협약준수 의무)

정부는 본 협약은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함과 아울러 본 협약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또한, 정부는 본 협약과 관련한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치행위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 제82조(목적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부록, 별첨 및 기타 본 협약의 일부로 간주되는 서류 포함)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당사자간의 기타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 제83조(완전 합의)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들은 협약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 협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협약당사자 간의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 제84조(언어)

본 협약은 한글 본으로 작성되어 치관도입 등 외자조달 필요성에 의해 영문본을 작성할 경우 해석상 한글본이 영문본에 우선한다.

### 제85조(문서의 우선순위)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2. 민간투자법 시행령



3. 본 협약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5. 제3자 개인공고

### 제86조(해석)

- ① 본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편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포함한다.
- ②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바찬가지이다.
- ③ 본 협약상의 표제 또는 계획은 참고 및 편의를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서 본문을 해석할 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 ⑤ 협약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대체인, 양수인을 포함한다.

#### 제87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 제88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규정)

본 협약 제6장(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제43조(기타 경비한 사업의 시행) 내지 제46조(운영실적보고), 제8장(위험분담), 제9장(중도해지 및 시설소유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의 종료), 제10장(분쟁의 해결), 제11장(비밀 유지 등 기타사항)의 규정을 성질상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존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제89조(경과조치)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 정부의 행정입법 등 재반행정조치가 본 사업완료 이전에 사업시행자를 위하여 개정되는 경우,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법령 및 행정조치가 본 사업에 반영되도록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 담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6년 12월 27일

대한민국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

건설교통부장관 이 용



대표이사 김종호

